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유의사항)</p> <p>이 규정에 <u>의한</u>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수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2조(유의사항)</p> <p>----- <u>따른</u>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4조(정의)</p> <p>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비효율·손실 등’(이하 “면책대상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p> <p>3.“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감사규칙에 따른 신분상 징계요구와 훈계 또는 경고[기관경고를 포함한다, (이하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4.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말한다.</p>	<p>제4조(정의)</p> <p>1. ----- <u>이란</u> -----</p> <p>-----</p> <p>-----</p> <p>2.----- <u>이란</u> -----</p> <p>----- <u>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u> -----</p> <p>-----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 -----</p> <p>-----</p> <p>3.----- <u>이란</u> -----</p> <p>----- <u>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u> -----</p> <p>4. ----- <u>이란</u>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면책대상) 이 규정에 <u>의한</u> 면책대상은 제4조제3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과, 같은 조 제4호의 '공무원 등'이다.</p>	<p>제5조(면책대상) ----- <u>따른</u> ----- ----- -----.</p>
<p>제6조(면책요건) 이 규정에 <u>의한</u>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p> <p>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u>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u></p> <p>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p> <p>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가능)</p>	<p>제6조(면책요건) <u>①</u> 이 규정에 <u>따른</u>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u>불합리한 규제</u>의 개선, <u>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u></p> <p>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u>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u></p> <p>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u>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u></p> <p>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u>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u></p> <p><u>②</u>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 4호에서 정한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u>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u></p> <p>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u>충분히 검토하였을 것</u></p> <p>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u>거쳤을 것</u></p> <p>4. 결재권자의 결재를 <u>거쳤을 것</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면책심사 신청)</p> <p>② 제12조에 의하여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1. ~3 생략</p>	<p>제13조(면책심사 신청)</p> <p>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 -----.</p> <p>③ 생략</p> <p>1. ~3 생략</p> <p>④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p>
<p>제14조(면책심사 처리)</p> <p>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면책심사 처리)</p> <p>① ----- -- <u>따른</u>----- ----- ----- ----- -----.</p>
<p>제15조(심사의견)</p> <p>2. 감경의견 :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제10조에 의한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제15조(심사의견)</p> <p>2. 감경의견 :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제10조에 <u>따른</u>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제16조(심사결과의 처리)</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심의회가 통보한 심사의견이 면책인 경우, 그 면책 대상자가 징계요구대상자인 때에는 면책처분과 함께 감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u>의하여</u> '훈계'하거나 제2호에 <u>의하여</u> '경고'하여</p>	<p>제16조(심사결과의 처리)</p> <p>① 생략</p> <p>② ----- ----- ----- ----- <u>따라</u> ----- <u>따라</u> -----</p>

현 행	개 정 안
-----	-------

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면책심사신청 안내
<p>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p> <p>2. 신청기간 : 처분예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p> <p>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p> <p>※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p>

면책심사신청 안내
<p>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p> <p>2. 신청기간 : 처분지시 이전</p> <p>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p> <p>※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p>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감사결과 <u>처분</u> 예정사항 통보서					
수신 :					
발신 :					
소속	직급	성명	비위 요지	<b>처 분</b>	근거 법규
				예정사항	
비고 :					

감사결과 <u>조치</u> 예정사항 통보서					
수신 :					
발신 :					
소속	직급	성명	비위 요지	<b>조 치</b>	근거 법규
				예정사항	
비고 :					

현 행	개 정 안
-----	-------

[ 별지 제3호서식 ]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사 명 명		감 연 월 일		감 사 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

**면책심사 신청서**

<u>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u>		
<u>구체적 판단기준 내용</u>	<u>해당여부</u>	<u>첨부서류</u>
<u>1.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u>		
<u>2.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u>		
<u>3.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u>		
<u>4.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u>		
<u>가.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u>		
<u>나.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u>		
<u>다.법령에서 정한 행정절 차를 거쳤을 것</u>		
<u>라.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u>		
<u>5.기타</u>		
<p>※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u>「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u></p>		
신 청 부서(기관) 인 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광진구청장 귀하		

## 현 행

[ 별지 제4호서식 ]

면책심사조서

<u>감 사 기 관 명</u>		<u>감사 연월일</u>	
<u>건 명</u>			
<u>신 청 인</u>			
<u>심 사 대 상 자</u>			
<u>징 계 등 양 정 ( 안 )</u>			
<u>비 위 내 용</u>			
<u>신 청 사 유</u>	공 의 성		
	타 당 성		
	투 명 성		
<u>감 사 담 당 관 검 토 의 견</u>	공 의 성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 개 정 안

[ 별지 제4호서식 ]

면책심사조서

<u>감 사 부 서 명</u>	<u>감 사 연월일</u>	
<u>건 명</u>		
<u>신 청 인</u>		
<u>심 사 대 상 자</u>		
<u>징 계 양 정 ( 안 )</u>		
<u>비 위 내 용</u>		
<u>신 청 사 유</u>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u>감 사 부 서 책 임 자 검 토 의 견</u>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합의견		